

# 기업체에 있어서의 특허정보활용

이 현 철\*

## 1. 머리말

오늘날 3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고도화 되었고, 수출도 높은 신장율을 보여 국제시장에서 비견하여 나아가게 까지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기술도 입도 활발하여 졌지만, 앞으로는 국내의 기술로 자체 개발할 때도 다가왔다고 보아, 우리 기업들도 기술혁신에 온 힘을 다하여 지난날의 노동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탈바꿈하여야만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혁신이 기대되며, 그 기술개발의 성과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의 획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더욱 작년 1월 1일부터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 공업소유권에 대한 전면 협정이 발효되어, 예측한대로 그들의 특허출원이 쇄도한 이 때에, 우리 기업에서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특허정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나에 대해서 될 수 있는대로 쉽게 풀이하여, 기술분야에서 종사하며 앞으로 특허정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 기업에서의 특허정보관리

근자의 발명은 조직과 투자의 산물이라고 들은 허 말하여지고 있다. 이 말은 옛날의 발명은 주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데 비해서,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와서는 여러 사

람의 두뇌와 방대한 투자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크게 뛰어날 수 있는 기술상의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기술전체의 수준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에너지가 개인의 능력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본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연구자와 자금과 시간을 소비하여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과 인재에 여유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개발에 뒤져도 된다는 법은 있을 수 없다.

그렇수록 대기업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에 힘써서 특허권을 소유하는 길 뿐이다. 한가지의 특허권으로 대기업과 더불어 호각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도 선진국에서는 생소하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독자의 기술을 갖는 일, 특히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보유하는 일은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눈부신 발명의 대부분이 자본력의 성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이라고 이러한 훌륭한 발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다.

방대한 자본력을 투자하여 이룬 발명이라도 반드시 여백이 있는 법이다. 이러한 여백을 찾아내서 그 구멍을 메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한 그와 같은 발명을 토대로 해서 보다 나은 발명을 이루는 방법도 있다.

한정된 자본과 연구자를 갖고 특허를 획득하려면, 타인이 이룩한 발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제도 자체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권이란 독점권이 부여되며, 그 공개된 기술을 다시

\*KORSTIC 特許情報部長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산업발달을 촉진하려고 하는 상승작용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자사의 특허를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특허에 대해 방위할 방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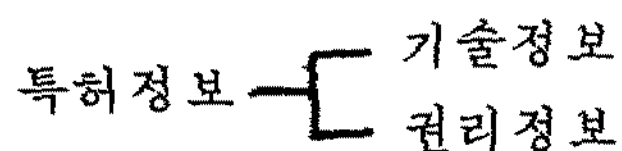
특허전쟁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현대의 기업을 보면, 이말은 실로 타당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기업간의 생존경쟁, 국제간의 도타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허를 획득하거나 타인의 특허에서 자기 기업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그것을 위한 정보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그 기업의 정보관리 활동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개발이나 특허의 획득이 정비례한다고 본다. 기업에 있어서의 정보활동은 현대 기업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기업에서는 기업의 대소를 불문하고 특허나 기술정보의 전담부서를 안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

### 3. 특허정보자료

일반적으로 특허정보라고 하면 특허에 관한 정보로 넓게 해석하여 특허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계된 법규, 특허권침해사건 등의 판례, 기술도입 계약서 등까지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겠으나, 특허정보관리로서의 대상정보라면 기술에 관한 정보로 협의로 쓰이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허정보는 기술에 관한 기록된 자료를 설명하려 한다.

“기술에 관한”다는 의미는 기술적인 기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 상세한 설명을 가하겠지만 특허정보는 기술정보와 권리정보의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는 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기술을 개시(開示)하고 있는 모든 문헌 자료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에 통상적

으로 행하는 선행기술(先行技術)의 조사 대상으로 참조하는 기술문헌은 특허명세서(特許明細書)를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가 특허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화될 수 있느냐를 심사하는 특허국의 심사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기술문헌도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다.

한편 권리정보라는 관점에서의 특허정보라면 거의 특허공보류(特許公報類)로 한정된다. 즉 특허공보에는 반드시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출원한 사람이 자기의 발명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범위로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허락(實施許諾) 등의 계약 또는 침해사건에 있어서의 침해의 여부를 가리는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특허공보는 권리정보로서의 특허정보라 볼 수 있다.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는 기술내용을 기록한 광범위한 것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앞서 말하였으나, 특허와 얽혀서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역시 특허공보와 같은 특허명세서다.

특허출원할 때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심사할 때의 인용문헌조사, 특허이의신청의 증거 등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서 정보의 출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나타난 문헌의 약 80% 이상이 특허공보류다.

특히 실례로 특허조사기관으로서 유명한 네델란드에 있는 I. I. B (Institute International des Brevets)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특허의 신규성조사(新規性調査)의 정보원(情報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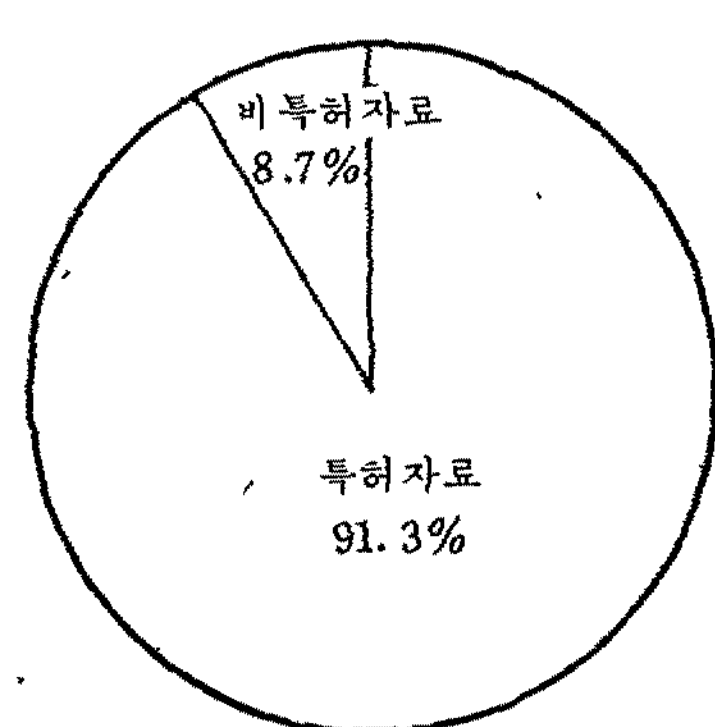


그림 1. I. I. B의 신규성 조사의 정보원

91.3%가 특허자료며, 나머지 8.7%가 비특허자료(非特許資料)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새로운 발명의 바탕이 대부분 특허명세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특허 정보라고 말할 경우는 특허공보류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칭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협의의 특허정보라 할 수 있다. 즉 특허정보를 딱딱한 표현으로 부르면, 공업소유권에 관한 기술을 개시한 간행물이라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장공보, 상표공보, 심결(審決), 판결(判決) 등이 특허정보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1차정보(一次情報)에 속한다. 즉 1차정보라 함은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이나 Report류, 각종 학술논문, 단행본과 같은 부정기간행물(不定期刊行物)들을 말하며, 2차정보(二次情報)는 이들 1차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이것을 초록(抄錄), 또는 각종 색인(索引)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특허정보에서 특허공보류는 1차정보이고, 특허초록지나 특허색인지들은 2차정보다.

이상의 정보자료는 보통의 경우 인쇄물로서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서는 Micro Film, 자기 Tape, 각종 Card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 4. 특허정보와 기술정보와의 차이

##### 4.1 내용으로 본 특수성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정보의 대표적인 특허명세서에는 기술을 개시한 이른바 기술정보인 동시에 특허권을 기술한 권리정보이기도 하다.

특허정보를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기술잡지나 학술논문에서와 같이 신기술의 수집과 기존기술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때 특허정보가 일반 기술정보와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특허정보가 특정한 기술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시된 내용이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내용 자체가 최신의 기술인 점과 함께 특허정보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것은 발명이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要件)으로 그 내용을 제 3자에게 널리 알려 줄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업소유권이라는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기술내용을 일정한 Rule 에 따라서 공개된다는 점에서, 그 기술의 이해와 응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성격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권리정보로서의 성격이다. 이것은 특허정보가 기술정보와 완전히 다른 점이며, 특수성이 가장 명확한 면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특허명세서는 그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제 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시함과 동시에, 그 발명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로 그 발명을 지배할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는 항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허정보를 권리정보로서 파악할 경우, 이 특허청구의 범위(앞으로 Claim 이라 부름)의 기재내용이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하는 즉, 즉 발명자나 출원인에게는 이 Claim을 적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발명의 가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도 되고, 불리하게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도 Claim의 기술에 따라서 권리로서 유효하게 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권리자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 발명이 기업에 관계 있을 때 그 Claim의 기재의 해석이 좁을수록 권리범위로 그 발명의 권리범위의 명확함은 권리의 분쟁(紛爭)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이 Claim을 적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4.2 형식상의 특징

보통의 정보(일반 기술문헌)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제목)이 있고 정보내용을 기술한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차, 집필자, 등이 기재된다. 요사이는 UDC(국제 십진법 분류) 기호를 붙인 문헌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

여기에 대하여 특허정보에는 위의 일반 문헌정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명칭, 저자, 잡지명 등 이외의 여러가지 형식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서지적 사항(書誌的事項) 또는 Index Data라고 부르며, 이것은 그 정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각각의 Data가 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허정보중에서 일본특허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서지적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발명의 명칭
- (2) 발명자의 주소 성명
- (3) 특허출원인의 주소 성명
- (4)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주소성명
- (5) 특허출원번호
- (6) 특허출원일
- (7) 우선권주장일(優先權主張日)
- (8)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제1국의 명칭
- (9)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제1국에서의 출원번호
- (10) 일본특허분류(주분류 및 부분류)
- (11) 국제특허분류(IPC)
- (12) 특허출원공고의 번호
- (13) 특허출원공고의 날자
- (14) 발명의 수(Claim의 수)
- (15) 면수(面數)
- (16) 도수(圖數)
- (17) 인용문헌(특허 심사관이 심사할 때 참조한 인용문헌)

이와 같은 서지적 사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며, 이것만을 모아서 소위 2차정보라 불리는 각종의 색인집을 만든다.

특허정보의 형식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점은 그 발행이 특정기술분야별로 묶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특허공보의 경우 7개의 큰 산업부문으로 나뉘어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7개의 산업부문은 다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산업분야에 속하는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특허가 한데 묶여져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특허공보를 추출하여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허공보는 이와 같은 발행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발행시점에서 찾아 낼 수 있다.

특허정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간행물의 규격이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보관리면에서 매우 유리한 특징이 된다.

정보관리의 제일보는 우선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관하는 일이므로 자료의 Size가 일정한 것은 보관을 위한 Filing, Hardware 시의 통일, Microfilm화 할 때의 Film의 Comma 배치의 용이 등 관리면으로 볼 때 여러가지 편리한 점을 가져옴과 동시에 관리비용도 절감 특허정보는 이와 같이 통일이 되어 있는 점에 더하여 인쇄되는 내용의 각 항목이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것은 이용할 때 편리한 점으로 공보를 뒤져서 조사할 경우, 특허 출원인별, 발명자별 또는 우선국 등 특정한 서지적 사항으로 조사할 때 조사의 Load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정보는 형식적으로 통일된 Form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특허명세서의 형식이 꼭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사를 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ICIREPAT에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각국의 특허공보류에 INID Cord (ICIREPAT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Cord)를 붙이도록 되었다.

그 주된 Cord를 소개하면,

- (10) 문헌의 표시.....특허, 실용신안의 구별
- (11) 문헌번호.....공고번호, 특허번호
- (19) 발행국
- (21) 출원번호
- (22) 출원일
- (30) 우선권의 Data
- (31)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번호
- (32)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 (33)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국명
- (51) 국제특허분류(IPC)
- (52) 국내특허분류(자국)
- (54) 특허의 명칭
- (56) 인용문헌.....심사시 인용 또는 참조된 선행기술문헌
- (57) 청구의 범위.....특허초록
- (71) 출원일
- (72) 발명자

⑩ Int. Cl.<sup>2</sup>  
D 21 H 3/28  
D 21 H 3/20  
D 21 H 3/38

⑪ 日本分類  
39 D 21  
39 B 22

⑫ 日本国特許庁

⑬ 特許出願公告

昭50-12481

特許公報

⑭ 公告 昭和50年(1975) 5月12日

庁内整理番号 7107-47

発明の数 1

(全 6 頁)

⑮ 紙力増強剤

⑯ 特 願 昭 4 5 - 6 8 6 3 7  
⑰ 出 願 昭 4 5 ( 1 9 7 0 ) 8 月 7 日  
⑱ 発 明 者 井手文雄  
大竹市西栄 2 の 9 の 7  
同 児玉恒雄  
大竹市黒川 3 の 2 の 3  
同 古武彌英  
同所  
⑲ 出 願 人 三菱レイヨン株式会社  
東京都中央区京橋 2 の 8  
⑳ 代 理 人 弁理士 小林正雄

発明の詳細な説明

本発明は、少量の添加で著しい紙力増強効果を示す新規な紙力増強剤に関する。

近年針葉樹が世界的に不足をきたし、紙の原料パルプにも広葉樹等の短繊維パルプを使用せざる

イオン系があり、陰イオン系共重合体としては、アクリルアミドとカルボン酸、スルホン酸等の酸基を分子内に含有する不飽和化合物との共重合体があり、これらの陰イオン系共重合体は紙力増強剤として使用すると、アルミニウムイオン等の多価カチオンの共存によつてパルプと強い親和性を示し、共重合体の大部分がパルプに定着するため、少量で優れた紙力増強効果を示す。

またアミノ基、窒素置換アミノ基又は第 4 級アミンモニウム基を分子内に含有する不飽和化合物をアクリルアミドと共重合させて得られる陽イオン系共重合体は、紙力増強剤として使用すると、共重合体が陰イオン系の場合に必要な多価カチオンが存在しなくてもパルプと強い相互作用を示し、少量で優れた紙力増強効果を示す。

以上のようにアクリルアミドの陰イオン系および陽イオン系共重合体は共に紙力増強性能が著しく高い。しかし原料であるアクリルアミドモノマーが比較的高価である上に、陰イオン性又は陽イ

그림 2. 일본특허의 사본

United States Patent  
Giddings et al.

[15] 3,640,694  
[45] Feb. 8, 1972

[54] METHOD OF TOUGHENING GLASS IN AN OIL BATH  
[72] Inventors: David George Giddings, Stourbridge; Douglas Twist, Hollywood, near Birmingham, both of England  
[73] Assignee: Pilkington Brothers Limited, Liverpool, England  
[22] Filed: Dec. 30, 1969  
[21] Appl. No.: 889,341  
[30] 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  
Jan. 8, 1969 Great Britain.....1,263/69  
June 24, 1969 Great Britain.....3,195/69  
[52] U.S. Cl.....65/116  
[51] Int. Cl.....C03b 27/00  
[58] Field of Search.....65/116; 148/28, 29

[56] References Cited  
UNITED STATES PATENTS  
1,959,215 5/1934 Owen.....65/116  
2,198,739 4/1940 Phillips.....65/116  
FOREIGN PATENTS OR APPLICATIONS  
316,108 11/1956 Switzerland.....65/116  
Primary Examiner—Arthur D. Kellogg  
Attorney—Imirie and Smiley and Snyder and Butrum

[57] ABSTRACT  
Glass of thickness in the range 0.5 mm. to 2.5 mm. is toughened by heating the glass to a temperature near to its softening point and then quenched with a selected oil whose viscosity is in the range 300 to 1,000 centistokes at 38° C. and whose flash point is in the range 220° to 310° C., whilst maintaining the temperature of the oil in the range 150° to 240° C. There is thereby induced in the glass a ratio of surface compressive stress to central tensile stress in the range 1.5:1 to 3.5:1.

10 Claims, No Drawings

그림 3. 미국특허명세서의 사본

(73) 권리자

이와 같은 INID Cord는 각각의 대응하는 항목의 머리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어가 서투른 사람이라도 서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할 때는 이 Cord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이점과 각국의 특허정보를 기계화(Computer화)할 때 편리한 이점이 있다.

\* ICIREPAT : 특허국간의 정보검색에 관한 국제협력위원회로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formation Retrieval among Examining Patent Offices의 약자로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해서 행하여지는 기술문헌을 비롯한 정보의 기계검색(機械檢索)을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 여기에 요하는 인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서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파리동맹의 한 전문위원회다.

5. 특허분류의 개요

정보관리를 할 때에 중요한 점은, 많은 정보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Pick up하기 위한 수단을 정하는 일이다. 그 수단의 하나는 앞서 말한 서지적 사항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특허분류다. 특허관계의 정보관리 뿐만 아니라 분류는 원래 정보관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생각해 낸 것으로, 특허정보에서는 일반과학 기술문헌보다도 그 분류개념이 뚜렷하여, 특허조사에서는 특허분류가 불가결한 것이 된다.

특허분류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분류를 갖고 있으며, 그 분류는 그 나라마다의 산업,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 체계도 다르며 같은 어구라도 그 개념이 다를 경우가 많아서, 특허조사에 임할 때는 그 대응관계를 정리할 때에 불편한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각국의 특허분류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특허종사자나 조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지만 그 전부를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나라의 특허분류와 앞으로 널리 사용하게 될 국제특허분류(IPC)의 개요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5.1 우리나라의 특허분류(KPC라 약칭함)

KPC는 원래 일본특허분류(JPC)를 모방한 것이나, JPC는 그동안 여러가지 새로운 물질, 제조방법, 조성물 등의 발명에 따라 많은 추가와 변화를 가져와 변형되었으나, KPC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1950년 이전의 JPC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KPC의 구성은 모든 산업분야를 136류로 대별하고, 그 각류를 Alphabet의 대문자 A, B, C 순으로 보조류를 두고, 다시 이 보조류를 10진적으로 세분하여 그것을 종목(種目)으로 하고 있다. 유의 배열은 농림, 수산, 광산 등 1차산업부터 시작하여 원칙적으로 가공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분야를 배열하였고 오락, 피복, 가구에서 끝나며, 끝으로 원자력관계가 부가되어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산업계열에서 보면 근연관계(近緣關係)에 있는 것을 서로 가까운 위치에 모아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이용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특허분류의 정의와 일반 사회의 통념과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80류에 분류되어 있는데, 특허분류에서는 자동차의 개념을 하중을 4륜이상으로 차지하고, 기관을 구비하고, 그것에 의해서 노면상을 주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운송법에서는 자동차는 자동 3륜차, 자동 2륜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분류에서는 3륜오토바이나 2륜오토바이는 81류의 자전거에 속해 있다.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2 국제특허분류(IPC)

IPC는 KPC가 원칙적으로 산업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해, 기술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끼리 모아 8개의 Section으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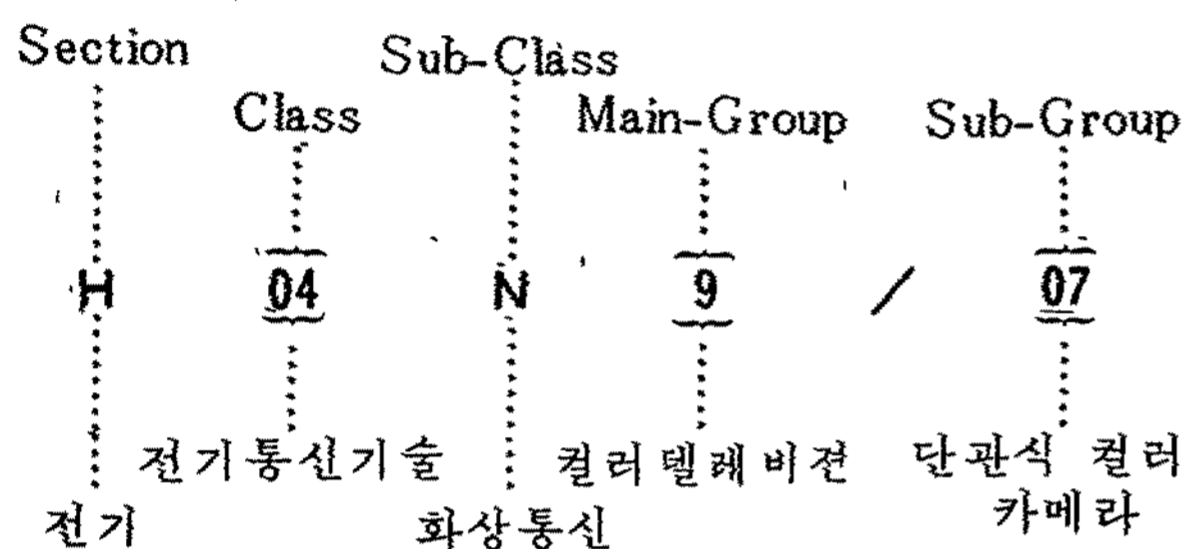
Section은 Rome자 A~H로 표기되고 각 Section에는 거기에 포함되는 기술을 명시하고 있다. (表 1참조)

IPC는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특허공보에 자국의 특허분류와 함께 IPC를 병기(併記)하고 있다. 따라서 IPC는 앞

表 1. IPC의 구성

Section	산 업 분 야	기술·제품분야
A	생 활 필 수 품	농업, 음식품, 가정용품, 가구, 보건 등
B	처 리, 조 작	분리, 혼합, 성형, 인쇄, 이송 ..... 등
C	화 학, 약 금	무기화학, 유기화학, 수처리, 도로, 유리, 석유, 세제, 야금 등
D	직 물	섬유, 방직, 염색, 종이, 펄프 ..... 등
E	고 정 구 조 물	도로, 개도, 다리, 수공, 급배수, 전조물, 열쇠, 광업 등
F	기 계, 조 명, 가 열, 무 기	기관, 펌프, 공학일반, 조명, 가열, 폭발, 무기 등
G	물 리	측정, 시험, 광학, 사진, 시계, 제어, 계산, 교육, 약기 등
H	전 기	전기소자, 발전, 전자회로, 전기통신 등

IPC의 실제



으로의 특허정보관리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으므로 특허에 종사하는 사람은 각국의 특허분류와 아울러 IPC에 대해서도 각별한 공부

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이상으로 특허정보의 개요를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으로 살펴 보았다. 현재 기업에서 기술부분에 종사하면서 특허부문의 일을 맡고 계신 분이냐, 앞으로 특허분야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허정보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 다소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p. 75의 계속>

1. Garrow C., Gilmore J.H. and Jackson G. L. "SDI IN CSIRO"
2. Jackson G. L.

3. "Profiling for CA Condensates" CSIRO SDI User's Manual 1974 (CSIRO Information Service)